

자동차정류장(선산터미널) 입체적 결정에 따른
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기존 단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합리적인 이용도모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·복합화·입체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.
- 선산시외버스터미널의 노후화 및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외버스터미널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.
- 노후화된 기존의 선산시외버스터미널을 정비하고,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하여 터미널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- 당초 평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에 공간적 범위를 추가하여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을 위한 사항으로
-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○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결정조서[변경사항없음]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④	자동차 정류장	여객자동차 터미널	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27-5번지 일원	10,261	-	10,261	경북고 제171호 (84.9.7)	

○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결정조서

－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(건축물 부문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구 분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④-1	자동차 정류장	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27-5번지	지상 1층	-	1,957.75	1,957.75	-	터미널, 부대 및 편익시설

－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(건축물 부문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④-1	자동차정류장 (여객자동차터미널)	- 공간적 범위(건축물 부문)결정 - 시외버스터미널 및 부대시설 - 지상 1층, 1,957.75㎡	당초 평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의 정비 및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⑤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⑦ 법 제28조 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
다.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시설(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)

5. 검토의견

□ 본 “자동차정류장(선산터미널)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” 건은,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」 제4조 규정에 의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노후화된 기존의 선산시외버스터미널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,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통하여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

○ 당초 평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에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의료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입안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